

대학원학칙 에너지환경대학원 (그린스쿨) 시행세칙

2010.3.1 제정

2012.3.1 개정

2015.3.1. 일부개정

2016.9.1. 일부개정

2018.3.1. 일부개정

2019.9.1. 일부개정

2020.3.1. 일부개정

<에너지환경대학원 행정실>

제 1조 (목적)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함)이 에너지환경대학원 (그린스쿨) (이하 "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국내외 에너지·환경 기술 및 정책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·환경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.

제 3조 (전공의 구성)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3개의 세부전공(신재생에너지, 첨단환경과학, 에너지환경정책 전공)으로 구성한다. < 조 신설 2016.9.1.>

제 4조 (전공의 성격) ① 신재생에너지 전공, 첨단환경과학 전공은 공학중심의 기술부문 전공으로, 학위수여는 공학석(박)사로 한다.

② 에너지환경정책 전공은 사회과학중심의 정책부문 전공으로서, 학위수여는 에너지환경정책석(박)사로 한다.

③ 석사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1. 논문트랙: 학위논문의 통과에 의한 학위 취득

2. 교과트랙: 논문트랙의 최소 취득 요구학점에 6학점을 추가 이수함에 따른 학위 취득

④ 제 3항의 트랙은 신입생 선발 때 학생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. 다만, 학생이 논문트랙을 선택할 경우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
⑤ 학생은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트랙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이 대학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교과트랙을 선택할 수 없으며 연구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<조 신설 2016.9.1., 조 개정 2020. 3. 1>

제 5조 (등록) ①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6조 (등록금) ① 등록금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금은 수업료, 입학금, 실험·실습비,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.

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.

④ 기본 수업연한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, 석·박사통합과정 4년까지는 등록

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7조 (미수료자 등록금 감면) 석사 및 박사과정 미수료자로서 5학기 이상 또는 석·박통합과정 미수료자로서 9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교과학점 1~3학점을 수강 신청할 때 등록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학생은 소정 기일에 학비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8조 (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) ①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2.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3.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
4. 학생이 등록 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경우
5.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6.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한 경우

②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

③ 학기 개시일 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전까지 제1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④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,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1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: 수업료의 5/6 반환
2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: 수업료의 2/3 반환
3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: 수업료의 1/2 반환

⑤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

⑥ 휴학생의 등록금은 제4항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. 다만, 학교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9조 (수업연한 및 수업연한 단축) 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이상으로 하며 석·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석·박사통합과정의 경우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. < 2015.3.1. 개정>

제 10조 (재학연한) ①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, 재학연한을 경과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이 세칙 제24조에 따른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11조 (휴학) ①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(지원 입대 포함)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.

- ④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 >

제 12조 (휴학기간)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, 통산 휴학기간은 석사2년(4학기), 박사3년(6학기), 석·박사통합3년(6학기)으로 한다.

- ② 군복무,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③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한다.
 ④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 ⑤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·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한다.
 ⑥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한다.<조 신설 2015.3.1.>

제 13조 (수강신청) ①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과내 규와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수강신청 한다.

- ② 매학기 교과학점은 15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 ③ 연구지도 학점(GRS510~530)은 교과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신청하여야 한다.
 ④ 이미 수강한 동일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으며, 재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 ⑤ 국내 학점교류대학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
 ⑥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과의 학점교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학기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. 다만,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조 개정 2015.3.1., 조 개정2020.3.1.>

제 14조 (수강신청 정정)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,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. <2015.3.1. 개정>

제 15조 (수강신청 추가 정정)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와 폐강 교과목을 정정할 자는 학사지원부에서 “수강신청(정정)원서”를 교부받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 >

제 16조 (학점취득) 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논문트랙: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27학점
 2. 교과트랙: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3학점
- ②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9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 ③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 <조 개정 2020.3.1.>

제 17조 (학점인정) ① 학점인정은 통산 최소 수료학점의 1/2을 초과할수 없다.

- ②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

1. 일반대학원, 타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 출신자 : 일반대학원, 타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 수료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취득한 학점중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각각 6학점 및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2. 본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 신규 입학 : 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 전공을 변경하여 동일 학위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전공 관련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,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3. 동일전공 박사과정 입학자 : 본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

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
4. 재학 중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취득학점 : 재학기간 중 국내 및 국제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. <조 개정 2015.3.1.>

제 18조 (교육과정)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유사과목의 학과별 중복 개설을 지양하고, 전공간의 유사한 성격의 과목은 이를 통합 활용하도록 한다.
3. 동일과목을 연속으로 개설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19조 (과정별 수료학점)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 학점은 석사과정 논문트랙: 27학점 이상 (교과트랙: 33학점 이상), 박사과정 39학점 이상, 석박사 통합과정 54학점 이상이며 과정별 연구지도 학점은 교과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, 조 개정 2020.3.1.>

②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20조(수료연구생) ①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“등록” 및 “수료연구지도”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료연구생에게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 <조 신설 2015.9.1.>

제 21조 (석박사통합과정) ①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중 2학기 이후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선발을 진행할 수 있다. ② 통합과정 제3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및 12월경에 실시한다. ③ 통합과정 제4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3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및 12월경에 실시한다. ④ 학생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⑤ 석박사통합과정의 모집인원은 전년도 박사과정 정원 중에서 미 선발 인원, 자퇴 및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조 신설 2017.9.1.)

제 22조 (이수지정과목) ① 이수지정과목(이하 “선수과목”이라 함)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도교수의 승인 또는 선수과목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다.

② 선수과목 이수자는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5학점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.

제 23조 (지도교수 및 박사과정 지도위원회)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.

1. 석사과정 : 입학과 동시에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위촉한다.

2.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

가. 입학과 동시에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위촉한다.

나.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대학원장은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.

③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.

제 24조 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 25조 (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 석사과정 논문트랙 학생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전공과목 27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
2. “연구지도” 학점 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.
3.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
4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5. 입학년도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6. 학위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학사운영내규에 따른다. <조 신설 2015.3.1., 조 개정 2020.3.1.>

제 25조의1 (교과트랙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) 석사과정 교과트랙 학생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전공과목 33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
2. “연구지도” 학점 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.
3.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.
4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5. 입학년도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6. 학위취득을 위한 추가요건은 학사운영내규에 따른다. <조 신설 2020.3.1.>

제 26조 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
2. “연구지도” 학점 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.
3.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
4. 영어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5.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6. 학위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학사운영내규에 따른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27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)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6년, 박사학위과정은 10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 할 수 없다. 다만, 군복무, 출산, 휴학,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28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)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, 후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29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) ① 심사용 논문(가제본된 것)

1. 석사 3부
2. 박사 5부

② 제출서류

1. 석사학위

- 가)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
- 나)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
- 다)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
- 라)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
- 마)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
- 바)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

2. 박사학위

- 가)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
- 나) 청구논문 심사위원추천서
- 다)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
- 라)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
- 마)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
- 바)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

③ 심사료 <조 개정 2015.3.1.>

제 30조 (완제본 논문의 용어)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,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
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외국어문학과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<조 개정 2015.3.1.>

제 31조 (자격시험의 종류) ①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
② 영어시험은 본교 혹은 외부 공인 기관이 시행한 영어시험으로 하며,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제 32조 (종합시험 응시자격)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②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수 이수과목 등 3과목 이내에서 시행한다.

③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7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④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5과목 내에서 시행한다. 다만, 본 대학원 및 본교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석사학위 종합시험 과목이 응시과목과 동일한 경우 해당과목들은 박사학위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⑤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30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⑥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5과목 내에서 시행한다.

⑦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3조 (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.

제 34조 (논문심사위원회) ① 석·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석·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.

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

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며,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

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
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④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,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35조 (논문심사) ① 학위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2차로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.

② 논문의 최종심사는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 36조 (학위수여 심의) 영어시험, 종합시험,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37조 (장학금)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지도교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 위원회에서 행한다.

제 38조 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39조 (대학원위원회의 회의) ①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, 대학원 부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"위원회설치운영규정"을 준용한다.

제 40조 (계약학과) ① 본 대학원에는 일반학과 외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둘 수 있다. ② 본 대학원의 계약학과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 다만, 수업연한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<조 신설 2020.3.1.>

제 41조 (준용)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 8조, 제 13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제 8조와 제 13조는 201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 5조 내지 제 8조, 제 10조 내지 제 12조, 제 15조, 제 18조 내지 제 20조, 제 26조, 제 28조 신설, 제 9조, 제 13조, 제 15조, 제 17조, 제 25조, 제 29조, 제 30조 개정, 제 16조, 제 22조 내지 제 24조, 제 27조, 제 31조 내지 제 40조 조 번호 변경)
2. (경과조치) 제 20조의 수료연구생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(제 3조 내지 제 36조 조 번호 변경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(제 21조 내지 제 40조 조 번호 변경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대학원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) 제1조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4조, 제13조, 제16조, 제19조, 제25조 개정, 제25조의 1 신설, 제40조 신설, 제41조 조 번호 변경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이전 재적생과 수료연구생에도 적용한다. 수료연구생 중 이 대학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교과트랙을 선택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021년 2월 졸업까지에 한하여 학점의 추가 취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정한다.